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. 17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1. 17

다. 상정일자 : 제 109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3. 1. 22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구용대 세무과장)

가. 제안사유

낙시어선업법 개정으로 낙시어선업 신고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신설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수산관계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에 낙시어선업 신고를 추가함

[기존조례 제3조 (별표1) 9. 수신관계 제10호 신설]

3. 관련법규

○ 낙시어선법 제4조 및 제21조의2

○ 부산광역시사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(낙시어선법)의 개정에 따른 하위관련 각종 법규의 보완적 차원의 조례개정사항으로, 낙시어선업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수수료액(2,500원)도 부산시내 각구군과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음.

○ 관련법이 2002. 5. 13공포되고, 2002. 11. 14부터 시행된점을 볼 때 약 2개월간의 공백상태가 있었던점이 있으나, 하루 빨리 개정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통과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